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443
----------	-------

발의연월일 : 2018. 7. 16.

발의자 : 박광온 · 송갑석 · 김해영

전현희 · 권칠승 · 최인호

이학영 · 윤관석 · 정재호

이춘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지난 2018년 2월 28일 노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기초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연금액을 20만원대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부대의견을 통하여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실시한 2018년도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하위 1분위 가구의 명목소득이 전년대비 동기에 비하여 8.0% 감소하는 등 저소득층의 생계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추가적인 지원책이 시급함.

이에 소득인정액이 65세 이상인 사람 중 하위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의 2019년의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노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5536호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④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이 65세 이상인 사람 중 하위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의 2019년의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정하기 위한 소득인정액의 기준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그 기준, 고시 시기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제5조제4항”을 각각 “제5조제5항”으로, “제6항”을 각각 “제7항”으로 한다.

제7조 중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를 “제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로 한다.

부 칙

օ)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5536호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① ~ ③ (생 략) <u><신 설></u>	법률 제15536호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u> <u>소득인정액이 65세 이상인 사</u> <u>람 중 하위 100분의 20 이내에</u> <u>해당하는 사람의 2019년의 기</u> <u>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u> <u>이 경우 하위 100분의 20에 해</u> <u>당하는 사람을 선정하기 위한</u> <u>소득인정액의 기준액은 보건복</u> <u>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u> <u>그 기준, 고시 시기 및 적용기</u> <u>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⑤ -----</u> ----- ----- ----- <u>제6항-----</u> -----.
④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다음 각 호의 연금 수급권자(이하 “국민연금 수급권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제5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 2. (생 략) <u>⑤ ~ ⑦ (생 략)</u>	1. · 2. (현행과 같음) <u>⑥ ~ ⑧ (현행 제5항부터 제7</u>

금액 이상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
제7조(기초연금액의 한도) <u>제5조</u> <u>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u>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초연금액이 기 준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 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본 다.	제7조(기초연금액의 한도) <u>제5조</u> <u>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u> ----- ----- ----- ----- -.